

평가매뉴얼
설명회용

지정측정기관 평가 매뉴얼

2018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평가센터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A 운영체계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9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11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19

[가감점 항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29
A.5 종합화	32

B 업무성과

B.1 업무수행 충실성	35
B.2 측정결과 신뢰도	40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53
B.4 고객 만족도	54
B.5 그 밖의 제반사항	55

1. 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소재지	(-)		
관할(지)청	총인원: _____명	산업위생관리기술사: _____명	
대표자		산업보건지도사: _____명	
전화번호		산업위생관리기사: _____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_____	변경지정일: _____	지정한계: _____

2. 평가일시

평가일(1차)	2018 년 월 일	평가일(2차 재평가)	2018 년 월 일
---------	------------	-------------	------------

3. 평가결과 획득점수

총 점			
평가항목	점수	평가항목	점수
A 운영체계		B 업무성과	

4. 평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97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7호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가. 평가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원				
평가반원				
평가반원				

나. 평가대상기관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참여자)			

평가항목 총괄표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합 계			1,000	
A 운 영 체 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40
			1.2 업무관리체계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2.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30
			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5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7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40
			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40
			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40
			3.4 실험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30
			3.5 분석자 및 측정자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	10
			3.6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3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최대 +10
			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5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대 -5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최대 +10	
B 업 무 성 과	소 계		600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40
			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20
			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40
			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자체 분석 여부	40
	B.2	측정결과 신뢰도	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40
			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30
			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30
			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30
			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30
			2.6 분석실험의 적정 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100
			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30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3.1 신규사업장 발굴율	100
	B.4	고객 만족도	4.1 측정사업장 만족도	40
	B.5	그 밖의 제반사항	5.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 기한 준수 여부	30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확인함

평가자(반장)				평가대상기관(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참고자료] 지정측정기관 평가항목 총괄표 신규대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문항수		'16년	변경	
			'16년	변경			
합 계			48	45	500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24	24	225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	1	신규	40
			1.2 업무관리체계	1	1	5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 (인적기준)	2.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1	1	15	30
			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	2	2	20	50
			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7	5	50	7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	6	2	70	40
			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	1	신규	40
			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3	3	25	40
			3.4 실험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2	2	20	30
			3.5 분석자 및 측정자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	1	1	5	10
			3.6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1	1	15	30
	가감점 항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	1	신규	최대 +10
			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	신규	최대 -5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	신규	최대 -5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권소사업 구성 및 활동)	-	1	신규	최대 +10
	B 업무 성과	소 계		24	21	275	600
B.1		업무수행 충실성	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	2	2	25	40
			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	1	1	10	20
			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2	1	30	40
			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 인자) 자체 분석 여부	-	1	신규	40
B.2		측정결과 신뢰도	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	2	2	30	40
			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3	1	20	30
			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1	1	15	30
			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1	1	15	30
			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4	2	35	30
			2.6 분석실험의 적정 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	6	5	70	100
			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1	1	15	30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3.1 신규사업장 발굴율	-	1	신규	100
B.4		고객 만족도	4.1 측정사업장 만족도	-	1	신규	40
B.5		그 밖의 제반사항	5.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 기한 준수 여부	1	1	10	30

A 운영체제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배점:40)	취 득 점 수	
평가항목 A.1.1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계획의 수립	①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적정한 경우		□ 40
	②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		□ 24
	③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 8
평가 취 지	<p>○ 지정측정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수준 향상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방침 및 사업(업무) 계획 수립의 적정성 평가</p>		
평가 방법	<p>○ 기관의 운영방침 및 사업(업무) 계획은 문서화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❶경영방침, 정책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와 ❷사업목표 및 성과평가 등 사업(업무) 계획, ❸직원전문성 향상 방안, 인력별 운영 계획, 장비운용 방안 등을 포함 작성하고,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여야 함 -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평가 문항에서 “문서화”란 동일한 의미를 뜻함 <p>○ 적정성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의 성과개선 여부를 평가한 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여 상호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였으나 방침에 따라 실행하지 않은 경우 “24” - 운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문서화)이 안 되는 경우 “8” 		
증빙서류	<p>○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 근거 문서</p>		

A.1.2	업무관리체계(배점:20)	취득점수	
평가항목 A.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업무관리체계	①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		□ 20
	②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일부 미흡하다		□ 12
	③ 조직도 또는 개인별 업무분장이 작성되어있지 않다		□ 4
평가취지	<p>○ 측정 및 분석 업무별 조직도 및 업무 분장을 통해 지정측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기관 인력의 입·퇴사 및 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경우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문서를 작성 기록·보존하여야 함</p> <p>○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은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측정책임자), 분석(정도관리)책임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p>		
평가방법	<p>○ 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문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20” -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총괄책임자, 측정책임자, 분석(정도관리)책임자가 조직도에서 구분되지 않을 경우 - 조직도 또는 개인별 업무분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문서화” 및 “기록·보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 인사이동 이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조정·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지정측정기관지정서, 인사기록부 또는 입·퇴사 관련 관리서류 등 확인) 		
증빙서류	<p>○ 조직도 및 업무분장</p>		

A.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인적기준)

A.2.1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배점:3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확보 여부	① (지도사, 기술사) 정규직 __명 × 6점 + 비정규직__명 × 3점 = __ 점	<input type="checkbox"/> 30	
	② (기사) 정규직 __명 × 4점 + 비정규직__명 × 2점 = __ 점		
	③ (산업기사) 정규직 __명 × 2점 + 비정규직__명 × 1점 = __ 점	<input type="checkbox"/> 18	
	④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정규직 __명 × 2점 + 비정규직__명 × 1점 = __ 점	<input type="checkbox"/> 6	
	⑤ ①~④의 합산점수 _____점		
평가 취 지			
	○ 작업환경측정 질 향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법적 인력기준 이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유도		
주요 착안사항			
	○ 법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근무형태, 출근부, 업무일지, 자격증, 고용 확인서류 등을 중점 확인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한계에 따른 인력기준 외의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평가 ○ 전문인력별 자격증 및 고용 확인서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 확인 ○ 평가대상 기간의 1/2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확보 인력으로 적용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평가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 - 육아휴직자는 인력대체자의 자격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④ 합산점수가 10점 초과 “30” - ①~④ 합산점수가 6점 이상 10점 이하 “18” - ①~④ 합산점수가 6점 미만 “6” 		
증빙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 확인서류		

A.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배점:5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 25)		평가결과
측정종사자 경력보유 수준	① 측정경력이 평균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② 측정경력이 평균 5년 이상~9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15
	③ 측정경력이 평균 5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 가 취 지	<p>○ 지정측정기관 종사자의 작업환경측정 업무 경력을 평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측정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기간 내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평가한다.(이직자 포함) -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p> <p>○ 작업환경측정 종사자의 측정업무경력이 해당 기관의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p>		
평 가 방 법	<p>○ 해당 기관의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업무담당자 지정 여부 (업무분장 및 조직관련 문서 등)를 확인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경력 산정에 반영(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p> <p>○ 개인별 최대 경력인정 상한은 15년으로 한다. 예) 종사자 3명 중 1명은 30년, 2명은 1년 경력인 경우 : (15년+1년+1년)/3명=5.6년</p>		
증빙서류	<p>○ 측정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 고용 및 경력 확인서류</p>		

A.2.2	관련분야 경력보유 수준(배점:50)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 25)	평가결과
분석 종사자 경력보유 수준	① 분석경력이 10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5
	② 분석경력이 5년 이상~9년 이하	<input type="checkbox"/> 15
	③ 분석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평가 취지	<p>○ 지정측정기관 종사자의 분석 업무 경력을 평가, 풍부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분석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분석결과와 정확성과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지정측정기관 종사자의 업무경력은 4대 보험 등 경력 관련 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해당 기관의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를 통해 분석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되 해당 서류는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p> <p>○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측정기관 종사 경력이 확인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여부 외에도 경력증명서 등 분석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경력 산정에 반영(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평가) <p>○ 평가대상기간 내 종사한 근로자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석자에 대해서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분석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 	
증빙서류	<p>○ 분석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 고용 및 경력 확인서류</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70)	취득점수	
평가항목 A.2.3.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측정·분석인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이행 여부	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모든 인력이 이행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율이 60%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이행율이 6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여 측정 및 분석 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교육·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p> <p>○ 매년 측정 및 분석인력 교육계획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 ※ 기록물에 최종승인① 결재가 누락된 것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 업무분장에서 모든업무를 총괄하거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p>		
평가 방법	<p>○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문서화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매년 수립하지 않았거나 문서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p>○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는 교육 이수증,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전문화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 전반적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 평가</p> <p>○ 수립된 개인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이행율을 평가한다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모든인력이 교육훈련을 모두 이행. “20”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중 개인별 교육훈련을 60%이상 이행. “12” -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전체인력 중 개인별 교육훈련을 60%미만 이행. “4”</p>		
증빙서류	<p>○ 교육·훈련 계획 관련 문서(교육 이수증)</p>		

<p>A.2.3</p>	<p>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70)</p>	
<p>평가항목 A.2.3.2</p>	<p>평가기준 (배점 : 10)</p>	
<p>기관 소속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p>	<p>① 모든 소속인력이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p>	<p><input type="checkbox"/> 10</p>
	<p>② 일부 소속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p>	<p><input type="checkbox"/> 6</p>
	<p>③ 소속인력의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p>	<p><input type="checkbox"/> 2</p>
<p>평 가 취 지</p> <p>○ 체계적인 전문교육 이수를 유도하여 지정측정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p>		
<p>주요 착안사항</p> <p>○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적정하게 이수 하였는지 여부 평가</p>		
<p>평 가 방 법</p> <p>○ 평가 대상기간 중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며,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가 입사전·후 이수한 교육이 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p> <p>○ 「직무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등의 교육기관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전문화(PDC)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전문화교육 인정범위(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p> <p>① 교육과정(일정)을 홈페이지, 신문광고,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p> <p>② 모든 지정측정기관 업무종사자가 교육신청이 가능</p> <p>③ 교육내용이 해당업무(작업환경측정)와 관련된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교육이수여부가 이수증이나 참가 확인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p> <p>*기관의 장이 동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내부직무교육은 전문교육 불인정</p> </div> <p>○ 평가대상기간 내 경력 1년 미만의 신규입사자는 입사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 이수 실적이 없을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산업보건관련 교육으로 제한)</p> <p>○ 최소 인정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 미만의 교육을 다수 이수한 경우 평가대상기간 내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평가(4시간을 1회로 평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전문화교육 제외대상</p> <p>① 해당 지정측정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직무교육</p> <p>② 법정 직무교육(보수교육 등)</p> <p>③ 학회·세미나 단순참석</p> </div> <p>○ 소속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이수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력(개인별)이 평가대상기간 중 1회 이상(4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10" - 전체 전문교육 실시 횟수를 전체 소속인력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 1회 이상인 경우 "6" - 전체 전문교육 실시 횟수를 전체 소속인력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 1회 미만인 경우 "2" 		
<p>증빙서류</p> <p>○ 근거가 되는 교육 이수증</p>		

<p>A.2.3</p>	<p>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70)</p>	
<p>평가항목 A.2.3.3</p>	<p>평가기준 (배점 : 10)</p>	<p>평가결과</p>
<p>기관장을 포함한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활동</p>	<p>① 전문성 향상활동이 평균 10점 이상인 경우 ② 전문성 향상활동이 평균 5점 이상인 경우 ③ 전문성 향상활동이 평균 5점 미만인 경우</p>	<p><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2</p>
<p>평 가 취 지</p> <p>○ 지정측정기관 종사자들(기관장 포함)의 산업보건(측정·분석)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및 학습조직 운영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p>주요 착안사항</p> <p>(세미나·학술대회 참석)</p> <p>○ 평가대상기간 내 기관장을 포함한 소속인력이 매년 1회 이상 산업보건분야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참석한 실적을 평가</p> <p>(자체 세미나 개최 및 학습조직 운영)</p> <p>○ 기관 자체 세미나 개최, 학습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기관장 제외) ※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p>		
<p>평 가 방 법</p> <p>○ 세미나·학술대회 참석 실적과 자체 세미나개최·학습조직 운영실적을 각각 평가한 후 평균 득점으로 평가 (평균 _____ 점)</p> <p>(세미나·학술대회 참석) _____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인력의 60% 이상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10” - 소속인력의 30% 이상 60% 미만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6” - 소속인력의 30% 미만이 매년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2” <p>※ 세미나, 학술대회 주관기관의 직인이 있는 참석확인증만 인정(학회 연회비등의 세금계산서는 불인정)</p> <p>※ 평가대상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여 후 퇴사한 인력도 종사인력에 포함하여 평가</p> <p>(자체 세미나 개최 및 학습조직 운영) _____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계획 및 결과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자체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모두 운영한 경우 “10” - 자체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중 어느 하나만 운영한 경우 “6” - 자체세미나 또는 학습조직 운영 실적이 없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경우 “2” 		
<p>증빙서류</p> <p>○ 세미나, 학술대회 참석확인증, 학습조직 운영관련 문서</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70)	
평가항목 A.2.3.4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여부	①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가 취지	<p>○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을 통해 측정 및 분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소속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이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업무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학위 수료(졸업), 대학의 강의 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기관장의 시간적 배려 또는 금전적 지원 실적을 평가</p>	
평가 방법	<p>○ 평가대상기간 중 기관에서 지원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 1건 이라도 있으면 “10” , 지원실적이 없으면 “0”</p> <p>○ ‘문서화’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 예시) 시간적배려: 유급휴가, 유연근무제 시행 관련 문서 또는 서류 금전적지원: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예산 집행 문서 또는 서류(예> 학원수강비, 응시료)</p> <p>○ 도서구입은 실적에서 제외</p>	
증빙서류	<p>○ 지원 실적 관련 서류</p>	

A.2.3	직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배점:70)	
평가항목 A.2.3.5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연구 실적	① 자기계발 및 연구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자기계발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자기계발 및 연구 실적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 가 취 지	<p>○ 지정측정기관 종사자들의 상위학위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연구 실적물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연재집 게재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자기계발)</p> <p>○ 평가대상 기간중 측정·분석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과정 입학 포함)하거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말함</p> <p>-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포함</p> <p>(연구실적)</p> <p>○ 산업보건관련 국내·국외 학회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한 측정기관 인력의 연구 실적물을 말함</p> <p>- 업무관련으로 안전보건전문지에 게재한 실적 포함</p>	
평 가 방 법	<p>○ 평가대상기간 중 측정 또는 분석 인력이 상위학위(과정 입학 포함) 및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거나 학회지, 학술대회 연재집, 안전보건 전문지 등에 연구 실적물을 게재한 실적을 확인하여 평가</p> <p>-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20"(동일인인 경우에도 인정)</p> <p>- 자기계발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12"</p> <p>-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4"</p>	
증빙서류	<p>○ 상위학위 및 국가자격 취득 서류 사본, 연구실적물 사본(저자확인이 가능한 경우)</p>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관리)

A.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배점:40)	취득점수	
평가항목 A.3.1.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법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정관리 여부	①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이 적정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법정 시설·장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 및 분석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정하는 장비에 대한 최신화된 목록 및 장비대장이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 장비대장은 용도,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에 대하여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 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어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p>※ 유지관리지침에는 관리(운용)책임자 지정, 관리조직, 구입계획 수립 및 시행, 점검 및 관리, 검·교정 대상장비 및 검·교정주기, 불용결정, 손상실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p>		
평가 방법	<p>○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의 보유 및 대장 작성·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가 유지관리지침, 장비목록 및 대장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되는 경우 “20” - 장비가 유지관리지침, 장비목록 및 대장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되는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12” - 장비가 유지관리지침, 장비목록 및 대장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되는 비중이 80% 미만인 경우 “4” <p>※ 시설·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는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로 평가한다.</p>		
증빙서류	<p>○ 장비대장, 장비 유지관리지침</p>		

A.3.1	법정 시설 및 장비 적정 관리(배점:40)	
평가항목 A.3.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법정 필수 장비에 관한 검·교정 실시	① 모든 법정 필수 검·교정 대상 장비에 대한 검·교정 계획 수립과 이행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검·교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법정 필수 장비에 대한 검·교정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검·교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가 취지	<p>○ 지정측정기관에서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한 검·교정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장비유지관리지침에 따른 검·교정 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비 : 유량계(공기시료채취기 보정기), 표준소음발생기(누적소음노출량계 보정기), 열선풍속계(대기의 온도·습도·기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포함), 전자저울, WBGT(흑구 온·습도계), 산소농도측정기, 조도계, 자동피펫 - 검·교정 주기는 운영 가이드의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 	
평가 방법	<p>○ 평가대상기간 내의 검·교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여부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교정 계획에는 검·교정 대상 장비 목록, 주기, 의뢰기관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화 되어야 한다. - 검·교정 주기는 최소 3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 - 검·교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20” - 검·교정 계획수립이 일부미흡하나 장비의 검교정 이행이 된 경우 “12” - 검·교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p>※ 검·교정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장비의 검·교정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p>	
증빙서류	<p>○ 검·교정계획이 수립 근거 문서, 검·교정 성적서</p>	

A.3.2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배점:4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2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고성능 장비 보유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① 고성능 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40
	② 고성능장비를 보유 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24
	③ 고성능장비의 보유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8
평가 취 지	<p>○ 고성능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유지·관리의 적정여부 확인을 통해 유기화합물, 산·알칼리, 이소시아네이트류 화합물 등에 대한 측정결과 정확도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을 위해 고성능장비' 보유여부 및 장비 유지·관리상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p> <p>* 유도결합플라즈마(ICP),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GC-mass, X-ray 회절분석기, 적외선분광분석기, 위상차현미경,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p>		
평가 방법	<p>○ 고성능 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장비를 보유하고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는 경우 “40” - 고성능장비를 보유 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 “24” - 고성능장비의 보유가 없는 경우 “8” <p>○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A.3.1.1을 준용한다.</p> <p>※ 장비 유지관리지침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24”</p> <p>○ 특수건강진단 등 타부서 장비 공용사용 및 단기 리스사용 적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서에서 보유한 장비 공용사용 불인정 및 2년미만 리스사용 불인정 <p>○ 고성능장비 중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는 ‘18년 평가에 선반영하고 추후 법개정 추진</p>		
증빙서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IC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HPLC</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GC/MS</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X-회절분석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적외선분광분석기 (FTIR)</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상차 현미경</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IC</p> </div> </div>		
	<p>○ 고성능장비의 보유 및 유지·관리 근거 서류</p>		

A.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배점:4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3.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 여부	①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이 있고,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20	
	②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다.	<input type="checkbox"/> 12	
	③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이 문서화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	<input type="checkbox"/> 4	
평 가 취 지	<p>○ 측정과 관련된 실험(분석)실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문서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토록하여 실험실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KOSHA Guide(G-82-2012)</p>		
주요 착안사항	<p>○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지침내용에 따른 점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지침은 보유 실험실의 현황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 등 사고 시 행동요령 ②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 ③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설비구비 또는 위탁처리¹⁾여부) ④ 비상용 샤워기와 세안설비(적정설치 및 상시가동여부) ⑤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전도방지조치의 적정성) ⑥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 - 실험실 안전보건 점검시 지침적용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¹⁾ 위탁처리를 위한 배액(폐액)수거통은 유기용제용, 중금속용, 산/알칼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p>		
평 가 방 법	<p>○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지침내용에 따른 정기적²⁾ 점검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안전보건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지침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20” - 안전보건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으나 지침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침이 실험실 현황과 상이할 경우도 포함한다. - 안전보건지침이 “문서화”되어있지 않거나, 안전보건점검이 지침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²⁾ “정기적”이란 월 1회 이상이 기준이며, 지침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을 인정한다. 다만, 지침의 점검주기가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단계 하향 평가한다.</p>		
증빙서류	<p>○ 안전보건지침, 실험실 안전보건 점검결과 문서</p>		

<p>A.3.3</p>	<p>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배점:40)</p>	
<p>평가항목 A.3.3.2</p>	<p>평가기준 (배점 : 10)</p>	<p>평가결과</p>
<p>실험실내 경고표지 (금연, 음식물 취식 금지표지 포함) 및 보호구 착용표지의 적정 부착여부</p>	<p>① 실험실내 안전·보건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고 이행이 적정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10</p>
	<p>② 실험실 내 안전·보건표지 부착 또는 이행이 미흡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2</p>
<p>평 가 취 지</p> <p>○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표지 적정 부착여부를 평가,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p>		
<p>주요 착안사항</p> <p>○ 실험실 내에는 안전·보건표지(유해·위험물질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지시표지, 금연, 음식물 취식금지표지 등)가 적정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실험실 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실험 이외에 흡연, 음식물 취식 또는 보관이 금지되어야 한다.</p>		
<p>평 가 방 법</p> <p>○ 실험실 내에서 취급하는 시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표지 및 음식물 취식, 흡연금지 등의 금지표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과 관련된 경고표지가 모두 부착되어 있고, 별도의 장소에서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또는 보관(취사도구 포함)이 이행되는 경우 “10” - 경고표지가 누락되었거나 흡연 및 음식물 취식 또는 보관(취사도구 포함)이 확인 되는 경우 “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div>		
<p>증빙서류</p> <p>○ 관련 사진</p>		

A.3.3	실험실 안전보건지침 보유 및 안전보건조치(배점:40)	
평가항목 A.3.3.3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 및 흡후드 장치 설치 여부	① 후드가 설치되고 적정하게 배기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후드는 있으나 배기상태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③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평 가 취 지	<p>○ 분석 장비별로 국소배기장치 설치(후드) 여부, 해당 유해인자별 제어풍속을 확인하여 실험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제어풍속 : 0.4 m/s)</p>	
평 가 방 법	<p>○ 원자흡광분광기(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ICP)의 후드, 실험실용 흡후드 설치 및 적정 제어풍속 유지 여부를 확인(제어풍속 유지 여부는 흡후드에 대해서만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한 경우 “10” - 후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부적정한 경우 “6” -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p>○ 흡후드의 제어풍속은 흡후드의 슬라이드를 평소에 작업하는 위치*에 놓고 측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열선풍속계를 활용하여 측정</p> <p style="margin-left: 20px;">* 슬라이드를 높이 30 cm 높이로 개방해서 제어풍속 측정</p> <p><참고사항></p> <p>○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의 후드 설치 여부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설치토록 권고</p>	
증빙서류	<p>○ 제어풍속 측정결과</p>	

A.3.4	실험실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 운영 (배점:3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4.1	평가기준 (배점 : 15)		평가결과	
실험용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운영	① 실험용 시약의 보관위치 및 설비가 적정하고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만 보관하고 있다.	□ 15 □ 9 □ 3		
	② 적정한 실험용 시약보관설비는 없으나 시약이 별도의 장소의 시약장에 보관되고 있고, 시료보관 설비에 시료만 보관하고 있다.			
	③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시약을 보관하는 경우 또는 시료보관설비에 시료이외의 것을 보관하고 있다.			
평 가 취 지	<p>○ 실험용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하여 시약 누출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측정시료만 별도 보관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분석용 시약은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실험용 시약보관 장소에는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함</p> <p>○ 시료보관설비(냉장고 등)에는 시료 이외의 시약, 음료, 음식물 등이 보관되지 않아야 함</p>			
평 가 방 법	<p>○ 분석용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을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약장에 보관하고 있고, 시료보관설비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15” -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은 없으나,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의 시약장에 보관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나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을 실험실내에 보관 하는 경우 “9” -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국소배기 또는 자체정화설비가 설치된 시약장을 실험실내에 설치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료보관설비에 시료이외의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3” 			
증빙서류	<p>○ 관련사진</p>			

A.3.4	실험실 시약 및 측정시료 보관의 적정운영(배점:30)	
평가항목 A.3.4.2	평가기준 (배점 : 15)	평가결과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적정성과 해당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여부	①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적정하게 작성되고, 해당시약의 MSDS 자료 보유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②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해당시약의 MSDS 자료의 내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9
	③ 시약 및 물품의 구매대장이 없거나, 시약의 MSDS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3
평 가 취 지	<p>○ 시약 및 물품의 선정·구매·보관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시약의 MSDS 자료를 확인 지정측정기관 종사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대장(전자파일 포함)등이 작성·관리되어야 하며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유하여야 한다.(전산화된 경우도 인정)</p> <p>○ 시약·물품 등의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u>전자파일</u>* 및 대장의 작성여부를 확인한다.</p> <p>* 구매에 대한 결재가 확인되는 파일</p>	
평 가 방 법	<p>○ 시약 5종을 무작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의 MSDS자료가 모두 최신화 되어 있고, 해당 시약에 대한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전자파일 및 관련내용이 모두 확인되고 관리되고 있는 경우 “15”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 중 1종 이상의 MSDS자료가 최신화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시약에 대한 선정, 구매, 보관에 대한 작성이 <u>미흡</u>*한 경우 “9” <p>* 대장은 있으나 작성이 일부 누락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 선정된 시약 5종 중 1종 이상의 MSDS자료가 없거나 3종 이상이 최신화 되지 않은 경우, 해당시약에 대한 대장이 없는 경우 또는 대장은 있으나 모두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증빙서류	<p>○ 관련 근거 MSDS 및 관리대장</p>	

A.3.5	분석자 및 측정자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 (배점:1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3.5	평가기준 (배점 : 10)		평가결과
분석자 및 측정자용 보호구 구비 및 사용	① 모든 보호구를 측정자 및 분석자 인원수에 맞도록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	□ 10 □ 6 □ 2	
	② 모든 보호구를 구비하고 있으나, 보유개수가 인원수에 못 미치는 경우		
	③ 보호구 구비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평 가 취 지			
○ 측정 및 분석 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구를 구비 및 착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분석자 및 측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가 인원수에 맞도록 구비되어야 함 - 보호구 :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장갑(화학물질 내구성), 실험복, 안전모, 안전화 등의 일체			
평 가 방 법			
○ 분석자 및 측정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하는 보호구의 종류 및 개수를 확인하여 평가 - 분석자 및 측정자의 인원수에 맞도록 보호구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 "10" - 모든 보호구를 구비하고 있으나, 보유개수가 인원수에 못 미치는 경우 "6" - 필수 보호구의 구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 보호구 관리대장 마련을 권고하고, 측정자에 대한 보호구의 적정 보유여부는 현장확인을 우선으로 하되, 출장 등으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구매여부(세금계산서, 구매계획 등) 등을 확인하여 평가 (분석자 필수 보호구) -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장갑(화학물질 내구성), 실험복, 발등을 덮는 신발 (측정자 필수 보호구) -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또는 귀덮개)			
증빙서류			
○ 보호용구 사진, 보호용구 구매 영수증 등			

A.3.6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배점:30)	취득점수																																																			
평가항목 A.3.6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개인시료 포집기 정상 작동 여부	① 대상 장비 전부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 30																																																		
	② 대상 장비 80% 이상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 18																																																		
	③ 대상 장비 80% 미만이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		□ 6																																																		
평가 취지	<p>○ 개인시료 포집기(sampling pump)의 성능평가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시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입자상물질 : 최대 압력부하 범위(또는 이하)에서 유량을 2.5 L/분(2.3 - 2.7 L/분)으로 조절한 후, 4시간 동안 가동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p> <p>○ 가스상물질 : 최대 압력부하 범위(또는 이하)에서 유량을 0.2 L/분(0.18 - 0.22 L/분)으로 조절한 후, 4시간 동안 가동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p> <p>※ 4시간이내 펌프가 꺼지거나 유량변동이 초기 설정 값의 ±5%(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읽는다)를 초과하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p>																																																				
평가 방법	<p>○ 측정 장비 전체 보유 대수 중 입자상 물질용 5대, 가스상 물질용 5대를 무작위 선정하여 장비의 성능을 평가함.</p> <p>- 입자상 물질 : 3단 카세트에 패드와 공극 0.8μm MCE 여과지 3장을 넣어 평가함,</p> <p>- 가스상 물질 : 실리카겔(400mg/200mg) 1개와 활성탄관 튜브(100mg/50mg) 2개를 직렬 연결하여 평가함</p> <p>* 평가 전일에 모든 측정 장비를 완전충전 하도록 함.</p> <p>* 선정된 측정 장비에 평가 매체를 장착하고 5분간 가동시킨 후,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가 유량을 조절하게 하게 함.</p> <p>* 2시간 간격으로 유량을 측정</p>																																																				
증빙서류	○ 유량측정 자료																																																				
<table border="1" data-bbox="172 1552 1246 1760"> <thead> <tr> <th>펌프 번호</th> <th>유량 (1차)</th> <th>유량 (2차)</th> <th>유량 (3차)</th> <th>정상여부 (O, X)</th> <th>펌프 번호</th> <th>유량 (1차)</th> <th>유량 (2차)</th> <th>유량 (3차)</th> <th>정상여부 (O, X)</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O, X)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O, X)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O, X)	펌프 번호	유량 (1차)	유량 (2차)	유량 (3차)	정상여부 (O, X)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A.4.1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배점:최대 +10점)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① 대통령상 : _____ 건 × 5점 = _____ 점 ② 국무총리상 : _____ 건 × 4점 = _____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상 : _____ 건 × 3점 = _____ 점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 _____ 건 × 2점 = _____ 점 ⑤ 민간단체장상 : _____ 건 × 1점 = _____ 점 총점: ①+②+③+④+⑤ = _____ 점(최대 10점)		_____ 점
평가 취지	○ 산업보건 분야 유공 기관 및 소속 직원 발굴을 통한 사기 진작 및 대외 공신력 확보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기간 내 산업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민간단체장” 으로부터 기관 또는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을 평가		
평가 방법	○ 평가기간 내 평가 기관 또는 소속직원이 산업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민간단체장*” 으로부터 포상실적을 관련 상장 또는 상패 등으로 확인하여 실적 평가 * 민간단체는 측정 및 분석 관련학회로 한정함 예> (사)한국산업보건학회, (사)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 (사)한국분석과학회 - 평가기간 내 근무하는 동안 포상한 실적에 한함(보유인력 중 포상자가 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포상을 받을 당시 소속기관에 한하여만 실적 인정)		
증빙 서류	○ 상패 등 포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사본		

A.4.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배점: 최대 -50)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2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50점)		평가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업무정지 처분 ___개월 × (- 15)점 = ___점 총점 : _____점(최대 -50점)		_____ 점
평가 취 지			
○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중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평가 방법			
○ 업무정지 처분 개월 수 당 15점 감점, 최대 50점 감점 -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예시) 업무정지 3.5개월 × -15점 = - 52.5점 (최대 50점 감점 적용)			
증빙 서류			
○ 처분 관련 공문			

A.4.3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배점:최대 -50점)	취득 점수	
평가항목 A.4.3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50점)		평가결과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시정조치·경고 처분 _____건 × (-5)점 = _____점 총점 : _____점(최대 -50점)		_____ 점
평 가 취 지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감점 평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의 업무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유도			
주요 착안사항			
○ 평가대상기간 중 지정측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등에 의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 평가			
평 가 방 법			
○ 시정조치·경고 처분에 대한 평가는 -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당 5점 감점, 최대 50점 감점			
증빙서류			
○ 시정 조치 관련 공문			

A.5 종합화(가점 항목)

A.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취득점수	
평가항목 A.5.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10점)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및 활동)	협약 기관간 교류실적 : _____ 건 × 1점 = _____ 점 총점: _____ 점(최대 10점)		_____ 점
평가 취 지	<p>○ 수탁 사업장 업무상질병 예방 활동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기관의 제한된 기술력 극복 등 상호보완 노력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지정측정기관의 역할 수행 극대화를 위해 <u>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¹⁾</u>과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을 통해 사후관리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p> <p>¹⁾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등</p>		
평가 방법	<p>○ 평가기간내 컨소시엄(협약) 체결기관과의 교류실적 건수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협약)기관간 교류실적은 구두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 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며 시행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 - 단, <u>동일사업자¹⁾</u> 인 기관과 연계할 경우 평가점수의 1/2(50%) 반영 <p>¹⁾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 작업환경측정결과 환기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환기설비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협약 등) 구성 및 활동 ※ 예시2) 근로자 건강관리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인간공학적 개선, 작업특성을 고려한 신체부위별 스트레칭 제시, 개인별 운동처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4)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50%이상 포함)공정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 예시5)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약 등)구성 및 활동 등 		
증빙서류	<p>○ 관련 근거 문서</p>		

B 업무성과



B.1 업무수행 충실성

B.1.1	측정 및 분석결과에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배점:40)	취득점수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보유 및 적용여부	①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매뉴얼과 동일한 경우	□ 20 □ 12 □ 4	
	② 일부 유해인자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③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평가 취지	<p>○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기관 자체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매뉴얼을 보유·적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적용 범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p> <p>○ 유해인자별로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자체 매뉴얼 보유여부를 평가한다.</p> <p>- 자체 매뉴얼의 작성기준에 대한 기본방침은 KOSHA GUIDE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p>		
평가 방법	<p>○ 자체 매뉴얼 보유 및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p> <p>-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은 측정사업장 5개소를 무작위 선정하여 현장에 적용한 방법과 매뉴얼상의 방법을 비교 평가한다.</p> <p>- 자체 매뉴얼은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로 보유하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거나, 하이퍼링크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하이퍼링크가 해당기관(KOSHA, OSHA, NIOSH, HSE 등)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은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p> <p>- 일부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료채취대장이나 분석대장의 내용과 매뉴얼이 상이한 경우 “12”</p> <p>- 기본방침 또는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4”</p> <p>- 매뉴얼이 최신성(update)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p>		
증빙서류	<p>○ 매뉴얼, 시료채취대장 또는 분석대장</p>		

B.1.1	측정 및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도 확보(배점:40)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①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행하는 경우	□ 20
	②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	□ 12
	③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 4
평가 취지	<p>○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분석정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유도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기관 자체 분석정도관리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내부 규정에는 운영체계, 관리책임자 지정, 정도관리 절차 및 결과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분석에 대한 정도관리 내부규정이 적정하게 수립·시행되는 경우 “20”</p> <p>-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행이 확인되면 인정</p> <p>○ 정도관리 내부규정의 실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실행된 경우 “12”</p> <p>- 내부정도관리 실시주기,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등</p> <p>○ 정도관리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4”</p> <p>- 공단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도관리 실시주기 등이 명시되지 않아 내부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내부규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p> <p>○ 고용노동부고시(16.8.16) 제2016-39호 제57조 1항 4호에 따른 “자율정도관리”는 내부정도관리로 인정하지 않음</p> <p>- 표준시료 제조 등 기관 자체적으로 정도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함</p>	
증빙서류	<p>○ 분석 정도관리 내부규정 관련 문서, 내부 분석 정도관리 실행 확인 자료</p>	

B.1.2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성(배점:20)	
평가항목 B.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검토의 적정여부	①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단계별 검토(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 가 취 지	<p>○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작성 및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결과 보고서의 신뢰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결과표의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단계별 검토(결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최종승인자의 확인일자 기록 필수)</p> <p>- 문서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는 해당기간의 업무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업무분장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토(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p>	
평 가 방 법	<p>○ 결과표 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문서 작성자, 분석자, 검토(승인)자의 명확한 구분 및 단계별 확인(결재) 여부를 평가(단, 소음만 측정하는 사업장의 보고서는 제외한다)</p> <p>- 무작위 추출한 결과표 5개 모두가 검토(승인)자의 확인(일자 포함), 분석자 확인이 있는 경우 "20"</p> <p>- 일부 결과표가 검토(승인)자의 확인(일자 포함)은 있으나 분석자 확인이 없는 경우 "12"</p> <p>- 일부라도 검토(승인)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측정결과표 사본</p>	

B.1.3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배점:40)	취득점수	
평가항목 B.1.3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유기화합물 및 금속의 분석방법 숙련도	①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	□ 40 □ 24 □ 8	
	②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경우		
	③ 분석방법과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		
평가 취지	<p>○ 측정대상 유해인자(유기화합물·금속)의 분석방법,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석결과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 측정대상(유기화합물/금속) 유해인자의 분석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석기기의 구성, 분석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p>		
평가 방법	<p>○ 분석기기(GC 또는 GC-MS, AAS 또는 ICP)의 이해도 평가 - 분석기기의 기본 원리와 주요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p> <p>○ 분석방법의 이해도를 평가. - 유기화합물·금속 물질 중 임의로 화학물질 4종(유기화합물 2종, 금속 2종)을 제시하여 분석자의 분석과정 및 분석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p> <p>○ 평가기준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 모두에 대해 분석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고, 분석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 “40”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중 어느 한가지라도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경우 “24” - 유기화합물 및 금속 각각에 대해 제시한 2가지 물질 모두 분석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분석기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한 경우 “8” ※ 면담대상자 : 지정측정기관 분석 신고인력</p>		
증빙서류	<p>○ 구술 평가내용이 미흡한 근거</p>		

B.1.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화학적인자) 자체 분석 여부(배점:40)	취득 점수	
평가항목 B.1.4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인자) 자체 분석 여부	①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0 <input type="checkbox"/> 24 <input type="checkbox"/> 8	
	②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③ 화학적인자 시료 및 결과 관리가 미흡한 경우		
평가 취지			
○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지정측정기관의 자체 분석 여부 및 시료 관리의 적절성 평가 ○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시료 의뢰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방법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의 자체 분석율, 시료관리의 적절성, 외부 분석기관 의뢰 시 시료 의뢰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을 각각 평가한 후 최저 평가항목 점수 반영. ① 자체분석율(%) = (자체분석 시료수 ÷ 전체 시료수)×100 ※평가대상기간 중 분석이 완료된 시료에 대해 평가 ② 자체 시료 분석 관리의 적정성 : 측정 결과표 무작위 5개 선정 ※ 시료인수·인계 및 분석실 시료관리 문서 확인 ③ 외부기관 의뢰 시 시료 및 결과 관리의 적정성 : 측정 결과표 무작위 5개 선정 ※ 시료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문서 확인 ※ ②,③ 관련문서에는 측정자(인계자), 분석자(인수자), 측정일, 시료인수일, 시료 상태 및 보존방법, 분석대상 물질, 분석일, 결과값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3개 분야별 3단계 평가항목 점수 반영 - ① 자체분석율 90% 이상, ② 90% 이상, ③ 100% 적정인 경우. (“40”) - ① 80% 이상, ② 80% 이상, ③ 80% 이상 적정인 경우. (“24”) - ① ② ③ 항목 중 1개이상 80% 미만이 있는 경우 (“8”) ※ 시료분석을 100%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대 “24” 반영 ※ 외부 분석의뢰 관련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부적정한 경우 한단계 하향평가 (5개소 무작위선정하여 1개소 이상 부적정일 경우)			
증빙서류			
○ 시료수 파악을 위한 문서			

B.2 측정결과 신뢰도

B.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배점:40)	취득점수	
평가항목 B.2.1.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예비조사 실시 대상의 측정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전회 측정 사업장 제외)	①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내용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측정계획서를 작성하나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필수작성 내용이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예비조사 실시 후 작성한 측정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작업환경측정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고시 제17조(예비조사 및 측정계획서의 작성)</p> <p>① 규칙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2.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운전조건 등을 고려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3.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4.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 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p>○ 신규 측정 사업장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계획서 작성 시 고시 제17조에 따른 항목 및 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고, 고시 제17조제1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하는 경우 “20” - 측정계획서를 80%이상 작성하거나, 고시 제17조제1항의 모든 항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2” -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80%미만), 고시 제17조의 항목이 하나이상 누락된 경우 “4” <p>※ 측정계획서상의 측정대상 유해물질과 측정결과표의 유해물질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p> <p>○ 취급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시행규칙 별표 11의5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명을 정확하게 측정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있는지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유기화합물”, “유기용제”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측정결과표 사본</p>		

B.2.1	측정계획서 및 종합의견 작성의 적정성(배점:40)	
평가항목 B.2.1.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상 종합의견의 적정성	① 관련 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관련 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작성대상공정을 누락하였거나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대책 항목이 일부 누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내용의 적정성(측정결과, 문제점, 대책 등)을 검토·평가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소음 및 화학물질 노출기준 1/2초과 및 초과사업장 위주로 측정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평가</p> <p>-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는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p> <p>- 노출기준의 1/2초과, 초과, CMR취급 공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확인하여 해당 공정에 대한 취급물질의 유해성, 해당 공정의 상황,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대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p> <p>- 안전검사 대상(49종)의 노출수준 50% 이상 초과시 국소배기장치에 한해 안전검사 실시 안내여부 평가</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초과공정에 대하여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이 기술되지 않았거나, 초과공정에 대한 종합의견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적정</p> </div>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2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배점:30)	취득점수	
평가항목 B.2.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누적소음 노출량계의 신뢰성 확보	①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기기환경이 적정하고,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18 <input type="checkbox"/> 6	
	② 누적소음노출량계의 기기환경은 적정하나, 비정기적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기록물보관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③ 누적소음노출량계의 표준소음발생기가 없거나, 기기환경이 적정하지 않거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평가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기록 및 소음측정 기록물(데이터)을 확인, 소음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수행 일지(대장) 또는 누적소음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통하여 보정수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보정수행 일자 포함) ○ 고시 제26조(측정방법)에 따른 기기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 법 제6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측정일자가 명기된 산출 기록물을 출력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수행 일지(대장)또는 누적소음 노출량계에서 출력한 기록물을 확인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수행 일지(대장)에는 소음계, 표준소음발생기, 보정일자, 보정수행자 포함되어야 하며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정하여야 함 -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출력물에 명시된 보정일자를 확인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적소음노출량계 전부에 대하여 기기환경 설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 현재 측정을 위하여 반출된 누적소음노출량계에 대해서는 출력기록물을 확인하여 평가 ○ 누적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한 사업장의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보관: "30", 80% 이상 보관: "18", 80% 미만 보관: "6"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관련 기록물 사본 		

B.2.3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배점:30)	취득 점수	
평가항목 B.2.3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시료 채취 전·후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①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 취지	<p>○ 개인시료 포집기의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시료채취 전·후의 유량을 측정하여 평균유량으로 보정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 채취 전·후 개인시료 포집기의 유량보정 실시여부가 관련 대장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보정 결과가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p>- 관리대장에는 포집기 기종, 일시, 유량 보정자, 보정 횟수, 유량보정 기기명, 전·후 유량 또는 전·후 각각 평균유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개인시료 포집기 유량 보정 및 반영 여부를 평가</p> <p>- 결과표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 수행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유량 보정 수행 여부와 그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p> <p>○ 평균 유량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보정기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대장에 평균 유량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횟수별 유량 작성 생략 가능)</p> <p>○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는 유량보정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6" 평가</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p> <p>※ 보정수행자에 대하여 보정을 수행하게 하는 등 보정방법을 확인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평가</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4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배점:30)	취득점수	
평가항목 B.2.4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①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필터의 중량분석 및 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가 취지	<p>○ 전자저울은 민감도가 높아 중량을 계량할 때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3회 이상 계량하여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측정 전·후 필터의 중량을 각각 3회 이상 계량하여야 하며, 관련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p>		
평가 방법	<p>○ 기관별 측정사업장 명단 중 중금속 및 분진 등 필터의 중량분석을 실시한 사업장의 측정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관리 적정 여부를 평가 - 측정 전·후 모두 3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으로 인정</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p> <p>※ 분석자 또는 중량분석일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한 단계 하향 평가</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5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배점:30)	취득 점수	
평가항목 B.2.5.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	① 시료채취(시간, 개수) 및 채취관련 기록의 작성이 적정하다	□ 20 □ 12 □ 4	
	② 시료채취(시간, 개수)는 적정하나 채취관련 기록이 일부 누락 되어있다		
	③ 시료채취(시간, 개수)가 부적정하거나 채취관련 기록이 미흡하다		
평 가 취 지	<p>○ 시료채취 시간, 채취시료 개수 등 시료채취 시작단계부터 분석의뢰 단계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분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시료채취 시간 및 채취시료 개수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p> <p>○ 시료 채취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대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p> <p>- 직독식장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p>		
평 가 방 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10개 선정, 시료채취 시간 및 시료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평가</p> <p>○ 시료 채취 관련 기록(대장) 보유 여부 및 기록내용의 적정성 확인</p> <p>- 시료 채취 관련 기록에는 채취일시, 유해인자, 시료채취시간, 작업장 온도·습도, 사업장명, 측정자명, 펌프번호, 측정전·후 유량, 측정대상자명(시료번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 시료채취(시간,개수) 및 채취관련 기록의 작성이 100% 적정한 경우 “20”</p> <p>- 시료채취(시간,개수)는 적정하나 채취관련 기록이 80% 이상 적정한 경우 “12”</p> <p>- 시료채취(시간,개수)가 부적정하거나 채취관련 기록이 80% 미만 적정한 경우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p>B.2.5</p>	<p>시료채취 시간, 개수의 준수 및 대장 작성(배점:30)</p>	
<p>평가항목 B.2.5.2</p>	<p>평가기준 (배점 : 10)</p>	<p>평가결과</p>
<p>지역시료를 채취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p>	<p>① 사유 명시가 모두 적정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10</p>
	<p>② 사유 명시가 80% 이상 적정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6</p>
	<p>③ 사유 명시가 80% 미만 적정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2</p>
<p>평가 취지</p>	<p>○ 지역시료를 채취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사유가 적정한지를 평가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함.</p>	
<p>주요 착안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규칙 제93조의3 제1항 제3호</p> <p>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2. (생략)</p> <p>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p> <p>4. (생략)</p> </div>	
<p>평가 방법</p>	<p>○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결과표 중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지역시료채취 사유(인정 가능한)의 명시 여부를 평가</p> <p>- 임핀저 사용, 근로자 거부, 안전상 작업방해,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 등</p> <p>○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한 결과가 포함된 결과표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수평가</p> <p>※ 모든 사업장에서 개인시료 만 채취한 경우에는 "10"</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10", 80% 이상 적정 : "6", 80% 미만 적정 : "2"</p>	
<p>증빙서류</p>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배점:100)	취득점수	
평가항목 B.2.6.1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와 보정 여부	① 현장 공시료를 항상 포함하여 보정하는 경우		□ 20
	②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일부 누락된 경우		□ 12
	③ 현장 공시료 및 분석결과 보정이 미흡한 경우		□ 4
평가 취지	<p>○ 시료채취 및 운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측정용 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현장 공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 채취 시 현장 공시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현장 공시료 포함 및 분석결과 보정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 채취 대장 등을 해당 측정 결과표와 비교하여 현장 공시료 포함 여부 확인 - 현장 공시료 분석결과와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하여 보정 여부 파악 <p>○ 현장 공시료가 세트별 1개 이상만 있어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트별 시료가 10개 이상일 경우 공시료 2개 이상 권고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증빙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배점:100)	
평가항목 B.2.6.2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① 검량선 작성이 모두 적정한 경우	□ 20
	② 검량선 작성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 12
	③ 검량선 작성이 미흡한 경우	□ 4
평가 취지		
○ 분석기기의 감도는 분석조건 및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분석시료 세트별로 검량선 작성을 유도, 분석결과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시료분석 시 분석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분석시료 세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평가 방법		
<p>○ 측정시기가 다른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검량선 작성의 적정성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분석을 할 때마다 세트별로 검량선을 작성하는 경우 "20" * 세트 : 장비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1tray(100~150개 시료) - 매번 검량선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1주일에 1회 작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12" - 검량선 작성 주기가 2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4" <p>○ 검량선, 공시료, 측정시료의 분석결과가 같은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미량으로 검출된 샘플의 경우 영점 검량선 작성여부 확인) <p>○ 검량선 작성과 탈착울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인정</p> <p>○ 유효기간내에 있는 시약 또는 표정할 시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 단계 하향평가</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계수(R²) 값이 유기용제의 경우 0.99, 금속의 경우 0.9 이상이 나오도록 권고 		
증빙서류		
○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배점:100)	
평가항목 B.2.6.3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보정 수행 여부	①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실험 및 보정 수행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실험 및 보정 수행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측정대상물질을 채취한 후 시료전처리과정을 통해 시료채취 매체로부터 분석대상 물질이 얼마나 탈착(유기용제) 또는 회수(중금속)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현장시료에 보정하여 분석결과 값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시료분석 시 분석시료 세트별로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반영되어야 함</p>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 및 결과의 보정 수행 여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분석을 할 때마다 세트별로 탈착율(회수율) 실험 및 결과 보정하는 경우 "20" - 매번 탈착율(회수율) 실험을 하지는 않지만 1주일에 1회 정도 하는 경우 "12" - 탈착율(회수율) 실험 및 결과 보정 주기가 2주일을 넘어가는 경우 "4" <p>※ 탈착, 회수 시료를 만들어 사용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p>	
증빙 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배점:100)	
평가항목 B.2.6.4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분석결과물 (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	① 모든 분석결과물을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분석결과물의 일부가 누락되어 보관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③ 분석결과물 보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평가 취지	<p>○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채취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물은 해당 결과표와 함께 적정하게 보관되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법 제6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3항</p> <p>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③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div>	
평가 방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의 적정 보관 여부 평가</p> <p style="padding-left: 20px;">- PDF 등 전자파일 형태도 인정</p>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20", 80% 이상 적정 : "12", 80% 미만 적정 : "4"</p>	
증빙 서류	<p>○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6	분석실험의 적정수행 및 기록보관 여부(배점:100)	
평가항목 B.2.6.5	평가기준 (배점 : 20)	평가결과
기기분석결과의 측정결과표 기록 적정성	①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100%인 경우	□ 20
	②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80%이상인 경우	□ 12
	③ 측정결과표 기록의 적정성이 80%미만인 경우	□ 4
평가 취 지	<p>○ 사용된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적정하게 기록함으로써 결과보고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사업장의 분석관련 서류상 사용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확하게 기록되었는지를 평가</p>	
평가 방법	<p>○ 측정결과표상 ND(Not Detected), Trace 등 미량검출된 사업장을 무작위로 5개 선정</p> <p>○ 선정된 사업장의 분석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사용된 분석기기, 측정치,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이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경우 적정으로 평가</p> <p>- 측정결과표상 사용된 분석기기, 검출한계(LOD), 정량한계(LOQ), ND(Not Detected), Trace의 의미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함</p> <p>○ 평가의 대상 100% 적정 : “20”, 80%이상 적정 : “12”, 80%미만 적정 : “4”</p>	
증빙 서류	<p>○ 분석결과서,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p>	

B.2.7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배점:30)	취득 점수	
평가항목 B.2.7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①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②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8
	③ 평가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평 가 취 지			
○ 결과표의 노출기준 적용 적정성을 확인·평가하여 결과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정하게 보정하여야 함			
평 가 방 법			
<p>○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측정결과의 노출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p> <p>○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유무를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 계산의 적정성 여부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공정에 대하여 노출기준 보정의 적정성 여부 <p>○ 평가 대상의 100% 적정 : "30", 80% 이상 적정 : "18", 80% 미만 적정 : "6"</p>			
증빙서류			
○ 근거가 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사본,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 보정 관련 서류 또는 대장			

B.3 신규사업장 발굴율

B.3.1	신규사업장 발굴율(배점:100)	취득점수													
평가항목 B.3.1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신규사업장 발굴율	① 신규사업장 발굴율 20%이상	<input type="checkbox"/>	100												
	② 신규사업장 발굴율 15%이상~20%미만	<input type="checkbox"/>	90												
	③ 신규사업장 발굴율 10%이상~15%미만	<input type="checkbox"/>	70												
	④ 신규사업장 발굴율 5%이상~10%미만	<input type="checkbox"/>	50												
	⑤ 신규사업장 발굴율 5%미만	<input type="checkbox"/>	30												
	⑥ 신규사업장 발굴율 없음(0)	<input type="checkbox"/>	0												
평가취지	<p>○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중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발굴하여 작업환경측정제도를 이행토록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이후 측정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사업장 발굴율을 평가한다.</p> <p>- 신규사업장 발굴율은 평가대상 기간내 해당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p>														
평가방법	<p>○ 기관의 측정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측정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한다.</p> <p>- 평가대상기간 내 결과표 송부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신규사업장 발굴율 2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신규사업장 발굴율 15% 이상 ~ 2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신규사업장 발굴율 10% 이상 ~ 1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신규사업장 발굴율 5% 이상 ~ 1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신규사업장 발굴율 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⑥ 신규사업장 발굴율 없는(0)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body> </table> <p>○ 자체측정기관은 신규사업장 발굴율 평가에서 제외하고 보정점수 반영</p> <p>- 보정점수: 자체측정기관을 제외한 평가대상기관의 총 득점 그룹별 평균점수를 적용</p> <p>※ 총득점 그룹 : 800점 이상, 700점 이상~800점 미만, 600점 이상~700점 미만, 600점 미만 등 4개 점수그룹으로 구분</p>			① 신규사업장 발굴율 20% 이상	“100”	② 신규사업장 발굴율 15% 이상 ~ 20% 미만	“90”	③ 신규사업장 발굴율 10% 이상 ~ 15% 미만	“70”	④ 신규사업장 발굴율 5% 이상 ~ 10% 미만	“50”	⑤ 신규사업장 발굴율 5% 미만	“30”	⑥ 신규사업장 발굴율 없는(0) 경우	“0”
① 신규사업장 발굴율 20% 이상	“100”														
② 신규사업장 발굴율 15% 이상 ~ 20% 미만	“90”														
③ 신규사업장 발굴율 10% 이상 ~ 15% 미만	“70”														
④ 신규사업장 발굴율 5% 이상 ~ 10% 미만	“50”														
⑤ 신규사업장 발굴율 5% 미만	“30”														
⑥ 신규사업장 발굴율 없는(0) 경우	“0”														
증빙서류	<p>○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전 평가</p>														

B.4 고객 만족도

B.4.1	측정사업장 만족도(배점:40)	취득점수	
평가항목 B.4.1	평가기준 (배점 : 40)		평가결과
측정사업장 만족도	① 평가점수 합계 80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40 <input type="checkbox"/> 24 <input type="checkbox"/> 8	
	② 평가점수 합계 60점 이상		
	③ 평가점수 합계 60점 미만		
평가 취지	○ 측정사업장 만족도를 평가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정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주요 착안사항	○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측정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설문지는 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2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구성항목 ※ 설문 문항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종합의견 만족도 ② 측정결과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③ 측정인력의 적극성 ④ 측정결과에 따른 설명회 개최 만족도 ⑤ 해당 사업장의 재해예방 기여도		
평가 방법	○ 응답사업장 중 10개소 무작위 선정, 각각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 10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 ※ 응답 사업장이 없는 경우 “이 지표의 평균점수” 반영 ※ 만족도조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외부 만족도 조사기관 결과 반영 ○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B.4.1”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증빙서류	○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B.5 그 밖의 제반사항

B.5.1	측정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배점:30)	취 득 점 수	
평가항목 B.5.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측정결과표 (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	① 송부기한 준수율이 적정한 경우	□ 30 □ 18 □ 6	
	② 송부기한 준수율이 일부 부적정한 경우		
	③ 송부기한 준수율이 미흡한 경우		
평 가 취 지	<p>○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 송부기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사업장에 신속한 보고서 전달 및 적기에 현장의 개선활동 유도</p>		
주요 착안사항	<p>○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전산자료)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 명시된 송부기한이 준수되어야 함</p>		
평 가 방 법	<p>○ 기관에서 공단으로 전송된 전산자료(최종 전산파일 접수일자 기준)를 확인하여 평가 (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민간기관평가센터에서 일괄 평가)</p> <p>○ 평가 대상의 90% 이상 적정 : "30", 60% 이상 적정 : "18", 60% 미만 적정 : "6" ※ 측정비용지원 사업의 결과표의 보고서 송부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p>		
증빙서류	<p>○ 필요없음</p>		